파주시 공고 제 2026 -3001호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 시간제) 참여자 모집공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지원을 위한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 시간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6. 11. 18.

파 주 시 장

---

1. 근무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간)

2. 근무조건 및 모집분야

세부유형	근무시간 및 급여	모집분야
전일제	▪ 1~11월 주40시간 / 월 2,236,300원 ▪ 12월주 37.5시간 / 월 2,096,530원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 행정도우미(사무보조) 25명 ▪ 환경정리,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38명
시간제	▪ 1~11월 주20시간 / 월 1,123,500원 ▪ 12월 주19시간 / 월 1,067,320원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 사무보조, 급식지원, 환경정리, 바리스타 보조, 복지서비스지원 요원 등 35명

3. 모집기간

가. 공고기간 : 2026. 11. 18.(수) ~ 2026. 11. 27.(금)

나. 접수기간 : 2026. 11. 20.(금) ~ 2026. 11. 27.(금) 09:00~18:00

※ 점심시간(읍면동별 상이)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신청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2027. 1. 1. 기준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다.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제한대상이 아닌 자

【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제한대상 】

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② **2027년 1월 1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근로종료일이 2027년 1월 1일 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③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④ **신청 당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근로종료일이 2027년 1월 1일 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됨

⑥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6.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현황'을 참고하여 희망직무 및 배치기관명 반드시 기재 **②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자 근무관련사항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참여자 정보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소지자)** 희망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②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여성가장)**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첨부서류 각 1부 ㉠ 미혼여성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부양인정기준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증명서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④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기준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

⑤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종료일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 1부

※ 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 시간제) 참여 중인 경우, 미제출

⑥ **2026년도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 제한된 자**
- 참여제한기간(2026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서류 제출

⑦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등**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4~26년) 이내 사용 가능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선발위원회 면접심사를 통한 모집분야별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가. 1차 서류심사: 2026. 11. 30.(월) ~ 2026. 12. 2.(수) ※ 1차서류합격 및 면접대상자 개별문자통보

나. 2차 면접심사: 2026. 12. 3.(목) / 2026. 12. 4.(금)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8. 결과발표 : 2026. 12. 14.(월) 합격자 개별통보예정 ※ 발표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9. 기타 참고사항

가. 신청서류는 접수 후 선정결과 발표까지 열·공람 및 보완 제출할 수 없으며, 기재누락에 의한 심사평가의 영향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나. 접수마감 이후 심사 및 결과발표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결과 및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라. 선발 후, 수행직무 및 배치기관은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희망직무 및 배치기관과 다를 수 있음

마. 심사결과 최종선발이 되지 않은 신청자는 대기자로 관리되며 향후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사업개시 이후에도 해당직무 및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수 있음

바. 참여 중 사업유형 변경 시, 해당유형 중단 후 재참여하는 것임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고 유급휴가(연가)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함

※ 예시 : 1월 1일~5월 31일까지 전일제였다가 6월 1일~12월 31일까지 시간제로 참여할 경우, 1년간 근무하였어도 퇴직금 미지급

사.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아.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동안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10. 문의사항 :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940-8414)